

중소기업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인천항 협력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고(변경)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과 협력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건전한 휴가문화 조성하고자 「인천항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납입금 중 실제사용한 금액의 50% 지원
- 공모기간: 2020. 6. 4.(목) ~ 6. 25.(목), 18:00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 지원사업 포인트 적립구조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인천지역 소재, 인천항 이용 중소·중견협력기업

대분류	소분류
운송업	해상여객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육상운송업
하역업	항만하역, 육상하역
보관 및 창고업	일반창고업(아암·북항배후단지 입주기업 포함),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 선박대여업, 선박 및 선원관리업, 관세사업, 포장·검량·검수·검역·감정, 예선업, 항만용역업(통선, 줄잡이, 급수, 래싱), 선용품 판매업, 선박급유업

○ 지원규모: 총 50명(기업당 5명이내 지원)

○ 선정기준: 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 제한대상

- 인천항 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 체납기업
-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가입 제한대상\*은 신청불가 하며 자세한 상세 가입자격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참고

\* 해당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 다만 소상 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신청 가능

### 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kkh868@icpa.or.kr](mailto:kkh868@icpa.or.kr)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032-890-8085)

○ 제출서류

- [서식1, 2]참가신청서, 신청근로자 명단 1부
- [서식3, 4]사업 신청 기업·근로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신청근로자 재직증명서 1부
- (해당기업)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해당기업)중견기업확인서 1부(중견기업연합회 <http://www.mme.or.kr>)

4. 추진절차

- 공고·접수: 신청서 제출(중소협력기업→인천항만공사)
- 지원대상 선정 및 결과 알림(인천항만공사→중소협력기업)
- 한국관광공사 휴가지원사업 신청절차에 맞춰 가입신청
  - (기업 회원가입) 사업참여신청: [vacation.visitkorea.or.kr](http://vacation.visitkorea.or.kr)
  - (근로자 회원가입) 포인트 사용: [vacation.benepia.co.kr](http://vacation.benepia.co.kr)



- 지원금 사용금액 확인('20.11.) 후 지급(인천항만공사→중소협력기업→근로자)

## 5. 유의사항

- 적립금 지원금 지급: 지원기간(2020.11.)만료 후 실제 사용금액의 50%를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

구분	정부(25%)	기업(25%)	근로자(50%)	합계(100%)
적립금액	100,000	100,000	200,000	400,000
(30만원 사용 시) 배분금액	75,000	75,000	150,000	300,000
인천항만공사 지원금액 (A*50%)	-	37,500	75,000	112,500

- 지원금 지급시기: 2020.12.(先 적립·사용 → 後 정산·지급)
  - 적립포인트 총 40만원 중 미소진 포인트는 정부분담금(25%)을 제외하고 환불(기업계좌로 일괄 환불)되며, 인천항만공사 지원금액은 상기의 분담비율에 맞춰 지원금액 확정 후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
-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 기업 및 근로자가 분담금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한국관광공사) 약관을 벗어난 경우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6. 문의처: 인천항만공사 일자리사회가치실 (032-890-8085)